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74272 손해배상(지)
원 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승욱, 김창권, 설지혜, 김동현
피 고 1. B 유한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피고들 담당변호사 안혁, 이은우, 이송연
변 론 종 결 2026. 3. 31.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43,431,491원 및 그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4. 9. 4.부터, 나머지 8,143,431,39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권 등을 관리하면서 그 이용을 허락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

2) 피고 C는 피고 B 유한회사의 미국 본사로, 스트리머들(이하 '피고들 회원'이라 한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중계하거나 이를 VOD 등의 형태로 게시하는 형태의 플랫폼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 유한회사는 D 플랫폼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광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저작권 수수료에 관한 협상

1) 피고 C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8. 6. 28.경 원고와 D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8. 11. 2. 원고

1) 원고의 영문 명칭은 "E"이고, 영문 약칭은 "F"이다.



에게 '음악저작물 사용신청서'도 제출하였다. 피고들과 원고는 2018. 6.말경부터 2023. 8. 4.경까지 정당한 저작권 수수료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2) 피고들은 2024. 2. 27. 피고들 회원에게 대한민국에서 D 사업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이를 공중에 송신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해외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중송신권의 수탁자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G(G, 이하 'G'이라 한다), H(H, 이하 'H'라 한다) 등으로부터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신탁받았다. 피고들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피고들 플랫폼에서 송신되는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들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공중송신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대가로 지급하였을 사용료 상당 8,643,431,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해외 저작권 집중단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해외 저작권 집중단체 G 등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음악저작물에 관



한 공연을 허락할 권리만을 부여받았을 뿐,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중송신권의 침해에 관하여 스스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소송을 위임받아 소를 제기한 것은 제3자의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 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G 등으로부터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권을 신탁받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29 내지 33, 39호증의 각 1, 을나 제33,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G은 미국 작곡가, 작사가, 출판사협회와 회원계약(memb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고(을나 제33호증), 위 회원계약 제1조에서 "(저작권) 소유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각 음악저작물의 비연극적 공개 공연에 대해 각 음악 작품에 대한 사용권을 협회(G)에 부여한다(grant)."라고 규정하고, 부여하는 권리 중 하나로 (c)항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유·무선(wired wireless)' 방식, 영화와의 모든 형태의 동기화(synchronism),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한 기타 모든 음성 전송 방식에 의한 비독점적 공개 공연권"을 들고 있다.

② G은 1987. 10. 1. 원고와 G이 관리하는 공연권에 관한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5.경 개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과 원고는 위 개정계약에 "F(원고, 이하 같다)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정의된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G에 신탁하기로 하며, 호혜적으로 G 또한 미국 저작권법에 정의된 디지털 전송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F에게 신탁하기로 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관리 계약에 따라 G은 F가 F 명의로 F 관리 지역에서 발생한, G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며, 그 역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1990. 1. 1.경 H와 H가 관리하는 공중송신권에 관한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경 H와 개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H도 "F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정의된 공중송신을 포함한 음악저작물에 속한 공연권을 H에 신탁하기로 하며, 호혜적으로 H 또한 미국 저작권법에 정의된 저작물의 공중 송신을 포함한 공연권을 F에게 신탁하기로 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관리 계약에 따라 H는 F가 F 명의로 F 관리지역에서 발생한, H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며, 그 역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의 조



항을 추가하였다.

④ H는 음악저작권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을나 제42호증), 위 계약 제4조에서 (a) 귀하가 소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로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 있는 모든 장소 및 모든 매체에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연하고, 타인에게 공연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 (b) 전기적 기록물, 전선, 테이프, 필름 또는 매체에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하고, 타인에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독점적 권리 등을 부여(grant)한다고 규정하였다.

⑤ 원고는 2007. 12. 10. I협회(I, 이하 'I'이라 한다)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조 (I)항에서 'I은 F에게 F의 관리지역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와 관련한 국내법, 양국간 조약 및 다자간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의 모든 공연에 대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F에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0. 10. 23. J협회(J, 이하 'J'라 한다)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조 (II)항에서 'J는 F에게 F가 관리하는 지역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와 관련한 국내법, 양국간 조약 및 다자간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되고, 존재하는 음악저작물의 모든 공연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양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⑥ 원고는 K(K, 이하 'K'라 한다)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K와 개정계약을 체결하면서 "F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정의된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K에 신탁하기로 하며, 호혜적으로 K 또한 태국 저작권법에 정의된 디지털 전송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F에게 신탁하기로 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관리 계약에 따라 K는 F가 F 명의로 F 관리 지역에서 발생한 K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침해행위에 대하



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며, 그 역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⑦ 원고는 L단체(L단체, 이하 'L단체'라 한다)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L단체와 개정계약을 체결하면서 "F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정의된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L단체에 신탁하기로 하며, 호혜적으로 L단체 또한 스페인 저작권법에 정의된 디지털 전송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F에게 신탁하기로 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관리 계약에 따라 L단체는 F가 F 명의로 F 관리 지역에서 발생한 L단체 관리 저작물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며, 그 역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H, I, J, K, L단체는 원고에게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국내에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도록 허락할 권리를 부여한 것을 넘어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권 자체를 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 H가 저작권자들과 각 체결한 회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저작권자들은 G, H에게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의미로 'gran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G에게 음성 전송 방식에 의한 "비독점적 공개 공연권"을 부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G, H에게 저작권을 관리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권한을 넘어서 저작권을 신탁하였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G, H가 원고와 개정 계약(갑 제29, 33호증의 각 1)을 체결하면서 G, H가 원고에게 위 음악저작권 중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신탁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G, H가 당초 저작권자들로부터 부여받은 음악저작물에 관한 비독점적인 사용 및 관리 권한을 넘어 원고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개정계약에서의 "신탁한다"는 표현을 신탁계약에 따라 그 권리 자체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G, H로부터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중송신권을 신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가 K, L단체와 체결한 개정계약에 위 각 단체가 디지털 전송권을 포함한 공연권을 원고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단체가 애당초 그 회원들로부터 위 공연권을 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위 각 단체는 자신의 공연권을 원고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한 결과 태국 및 스페인에서도 직접 공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원고와 위 각 단체가 체결한 기본계약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단체로부터 위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G, H, K, L단체와 기존에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을 일부 개정하면서 G, H, K, L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침해행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만일 원고가 G, H, K, L단체로부터 음악 저작물의 공중송신권을 신탁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굳이 개정계약에서 원고의 소송 제기 권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④ 원고가 I, J와 체결한 계약에는 공연에 대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신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다) 원고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지 여부

G, H, K, L단체가 원고에게 그 관리저작물의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공연권 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그 허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G, H, K, L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실은 국내 법인인 원고가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국내에서의 소송 진행 역시 국내 법인인 원고가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편리한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소송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H, K, L단체로부터 소송신탁을 받은 원고의 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정도의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H, K, L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권자가 G, H, K, L단체라면, G, H가 직접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사건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다수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등의 사정으로 권리주체가 직접 소송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 진행이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원고와 G, H, K, L단체의 권리관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송수행상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G, H, K, L단체를 통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권을 G, H, K, L단체에



부여한 저작권자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어떠한 고유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G, H, K, L단체로부터 소송신탁을 받은 청구 부분과 I, J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의 특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침해 저작물이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 회원들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국내 저작권에 관한 광범위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침해 저작물(갑 제16 내지 1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침해 사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특정한 침해 저작물에 대한 개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는바(2025. 6. 20.자 준비서면), 원고가 침해되었다거나 무단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저작물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본안에 관한 예비적 판단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살펴본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 회원들은 피고들 플랫폼을 통하여 원고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다수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방송에 사용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은 ① 피고들 회원들의 음악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 회원들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들 회원들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감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교사 등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 23, 28호증, 갑 제25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피고들 회원으로 하여금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피고들 회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는 2020. 11. 11. D에 "M"라는 제목의 글(갑 제9호증)을 게시하면서 피고들 회원들에게 '피고들 회원들이 미국 저작권법(DMCA)을 위반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는 수가 증가하였고, 그 대부분이 음악저작권을 보유하지 않는 음악을 방송에서 재생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에 피고 C는 DMCA 통지의 대상이 되는 VOD와 클



립 등을 계속 삭제하고 있는 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방송에서 위 음악을 재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방송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싶다면 피고 C가 라이선스를 확보한 N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O, P 등과 같이 저작권 등 권리관계가 명확한 음악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을 알렸는바, 피고들은 D에서 피고들 회원들에게 음악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가 확보된 음악만을 재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을 뿐,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독려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D 스트리머들에게 각국의 저작권 단체로부터 생방송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었다고 홍보하는 등 자유롭게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라고 장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들 회원에게 보낸 'VOD와 클립에서 커버곡을 검토해보세요'라는 제목의 2021. 6. 10.자 이메일(갑 제28호증)에는 "미국 및 전세계에서 G, H, Q와 같은 R와 다수의 음악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 생방송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R와 맺은 라이선스는 생방송에서 노래를 커버하는 걸 허용하지만, VOD와 클립으로 녹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VOD와 클립에 곡을 커버한 콘텐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음악배급사로부터 DMCA 통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를 받았다거나 D 서비스에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 이메일의 내용에 2020. 11. 11.자 글(갑 제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스트리머들에게 방송에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R와 라이선스를 맺은 음악저작물은 생방송



에 한하여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③ D 플랫폼에서 방송을 했던 스트리머 S는 이 법정에서 '피고들이 피고들 회원의 방송 횟수 및 시간, 방송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의 내용, 방송시 음악의 선정 등 저작권 사용 관련하여 피고들 회원들의 행위에 관여한 바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들이 스트리머들의 방송 및 게시물 내용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피고들 회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도록 장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계약의 체결을 회피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면서 협상기간 동안 피고들 회원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2018. 6. 28.경부터 2023. 8. 4.경까지 D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관련하여 피고 C의 국내 부문 매출액, 스트리밍에 활용된 고유 기기의 수, 광고 수익 등 자료를 기초로 적정한 저작권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논의를 이어 온 점(갑 제8호증의 1 내지 24), 원고는 2018. 10. 23.경 신규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므로 피고 C와는 2019년경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원고 스스로 계약 체결의 시기를 늦추기도 한 점(갑 제8호증의 8)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수수료에 관한 논의를 장기간 계속하여 오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만이 확인되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로 허위의 저작권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와 저작권 수수료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하여 D 서비스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못하게 할 유인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 C는 원고에게 D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음악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점, (저작권 위반을) 스캐닝하기 위한 빈도를 3분 간격으로 좁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 수수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점이 확인된다(갑 제8호증의 23).

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관련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등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등 침해를 쉽게 하여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등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등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등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 등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 등을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참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 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



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쉽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가 있었거나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들이 국내에서 D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인 이 사건 소송에 이



르러서야 피침해물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게시물의 특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침해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침해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들이 회원들에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공지한 게시물(갑 제9호증)을 올린 사실을 들어 피고 C가 불법게시물이 플랫폼에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C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 파일을 방송에서 재생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이 침해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피고들과 음악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논의 중이었기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은 과거 피고들이 D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 상당의 수수료 및 향후 저작권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급하게 될 저작권 수수료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현존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침해된 음악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에 대한 실시간 스트리밍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게시된 VOD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1)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관리통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4 내지 9, 38호 증, 을나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피고들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영상물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고 C는 저작권자가 이른바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통하여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음악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URL 주소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관리자가 침해 게시물을 특정하면 피고 C는 즉시 해당 라이브 스트리밍 게시물의 송출을 중지하거나 이를 삭제하고 회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 피고들 회원이었던 스트리머 S는 이 법정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 콘텐츠가 지워진다는 이른바 Notice and Take down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들 회원들은 음악저작물의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음악을 사용한 콘텐츠는 게시되더라도 삭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2020. 11. 11. 피고들 회원 전부를 대상으로 방송에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음악을 재생하지 않아야 하고, 라이선스를 확보한 음악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들 회원 중 저작권의 침해를 한 회원들에게 같은 날 안전하게 스트리밍하기 위하여는 "해당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필요한 권리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녹



음된 음악을 스트리밍에서 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을나 제38호증). 피고들은 이처럼 피고들 회원들에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주지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매일 방대한 양의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가 방송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요청받거나 신고되는 콘텐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는 외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적법한 이용허가를 받은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피고들이 실시간 스트리밍의 제목만으로 위반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는 음악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통지 및 삭제' 조치를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등에 관한 권한 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피고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도 상당하다.

(2) VOD, 클립 서비스에 대한 관리통제

앞서 든 증거, 갑 제9, 23, 24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 C는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 T 프로그램의 활용, 반복 침해자에 대한 계정 해지 절차 조치 등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처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로서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



차를 통하여 저작권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URL 주소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권리가자가 VOD 게시물을 특정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고와 같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들은 스트리머들이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 불법 음악저작물을 게시하면 피고들과 같은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원고의 권리에 대해 고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② 피고 C는 DMCA 통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회수가 3회 누적되는 피고들 회원의 경우 이른바 '반복 침해자'로 간주하고, 위 회원이 D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회원의 계정을 임시로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에 피고 C는 2023년 한 해 동안 반복 침해자 2,788개의 계정에 서비스 이용 정지를 하였다.

③ 피고 C는 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VOD를 스크리닝하고, VOD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이 감지되면 해당 부분의 음성을 자동으로 음소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²⁾인 피고들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저작물을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선별하여 적시에 삭제하는 등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2) 피고 C는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서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27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이혜인

 판사 김선호